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웹사이트 — 조치 불요

귀하의 계정 기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보 관행법(민법 섹션 1798.17)에 따라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CDTFA)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CDTFA는 캘리포니아 주의 수 많은 세금 및 수수료 법률을 관리합니다. 허가, 증명서, 면허 또는 갱신, 구제 요청, 납부 계획, 타협 제안, 합의 또는 기타 신청을 신청할 때 CDTFA는 법률에 따라 요구하거나 등록을 위한 기록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CDTFA는 귀하가 세금과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귀하는 사회보장번호(식별 목적으로 사용됨 [미국법전 42조 405(c)(2)(C)(i) 참조])를 포함하여 CDTFA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익 및 과세법 섹션과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귀하의 정보를 관리하도록 CDTFA에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해당 법률의 섹션의 전체 목록은 이 양식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온라인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주의: 귀하의 컴퓨터는 안전합니까?](#)를 방문하십시오.

###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허가, 증명서, 면허증, 구제 요청, 납부 계획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면제, 세액공제, 제외 또는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청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민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예. 귀하의 기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CDTFA는 귀하의 계정에 관한 정보를 특정 지역, 주, 연방 정부 기관이나 해당 정부 기관을 대표하도록 계약 및 승인을 받은 회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승인된 경우, CDTFA는 귀하의 계정 유형, 계정의 시작 및 폐쇄 날짜, 사업주 또는 파트너 이름 등 허가, 증명서 또는 면허증에 인쇄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CDTFA는 인수자 또는 기타 매각 관련 당사자에게 귀하의 미납 세액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CDTFA는 귀하의 허락을 받아 귀하의 계정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귀하의 위임된 대리인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CDTFA는 다음 기관의 승인된 담당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 및 공무원, 세금 집행 목적을 위한 캘리포니아 외부의 주 기관,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및 디스트릭트, 캘리포니아 주 시 및 카운티 변호사, 검사 및 법 집행 부서, 지역 담배 규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기관.

### 나의 기록을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래 기재된 공무원이 귀하의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나 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1-916-309-1862번으로 CDTFA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기록에 대한 질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00-400-7115(문자 전송 전화:71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태평양 표준시), 주 공휴일 제외. 아래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Field Operations Division, MIC:47

Deputy Director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7  
1-916-309-8209

#### Business Tax and Fee Division, MIC:43

Deputy Director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3  
1-916-309-5200

### 자신의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기록 검토 서면 요청을 가장 가까운 CDTF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CDTFA 사무소 위치 목록이나 [간행물 58A](#) 사본, 기록을 검사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한국어로 제공, [간행물 58A-K](#), 기록을 열람하고 수정하는 방법) 원하면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를 방문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00-400-7115(문자 전송 전화:711)로 전화하십시오. 기록 검토에 대한 요청은 Disclosure Office, MIC:82,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2.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아래 기재된 주법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래의 법률의 섹션의 출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수익 및 과세법입니다.

### 판매 및 사용세

- 판매 및 사용세 (섹션 6001-7176, 7200-7226, 7251-7279.6, 7285-7288.6)
- 목재품 평가 수수료(섹션 55001-55381, 공공 자원법 섹션 4629-4629.13)
- 선불 모바일 전화 서비스 추가료 (섹션 55001-55381, 42100-42111)

### 특별세 및 수수료

- 주류세 (섹션 32001-32557)
- 캘리포니아 전자 담배 소비세(캘리포니아 보건 및 예방 교육법 섹션) 31000-31008)
- 캘리포니아 타이어 수수료 (섹션 55001-55381, 공공 자원법 섹션 42860-42895)
- 대마초 소매업자 소비세 (섹션 34010-34021.5, 55001-55381)
- 아동 납종독 예방 수수료 (섹션 43001-43651,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5310)
- 담배 및 담배 제품세(섹션 30001-30483,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4555-104558)
- 2003년 담배 및 담배 제품 허가법(섹션 55001-55381,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2970-22991, 정부 규정 섹션 15570.66, 형법 섹션 830.11)
- 모니터 달린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섹션 55001-55381,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214.9-25214.10.2, 공공 자원법 섹션 42460-42486)
- 디젤유 세 (섹션 60001-60709)
- 긴급 전화 사용자 추가료 (섹션 41001-41176)
- 에너지 자원 추가 요금 (섹션 40001-40216)
- 총기, 탄약 및 총기 전구체 부분 소비세 (섹션 36001-36043, 55001-55381, 형법 섹션 26700, 26705, 30395, 34400)
- 유해물질세 (섹션 43001-43651,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174-25174.11, 25205.1-25205.23)
- 폐기물 통합관리비 (섹션 45001-45984, 공공 자원법 섹션 48000-48008)
- 국제 연료세 협정 (섹션 9405-9433)
- 납산 배터리 재활용 수수료 (섹션 55001-55381,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215-25215.75)
- 리튬 추출 물품세 (섹션 55001-55381, 47000-47100)
- 해양 침입종(평형수) 수수료 (섹션 44000-44007, 55001-55381, 공공 자원법 섹션 71200-71271)
- 항공기 제트 연료세를 포함한 자동차 연료세 (섹션 7301-8526)
- 천연가스 추가료 (섹션 55001-55381, 공공 유틸리티법 섹션 890-900)
- 직업상 납종독 예방 수수료 (섹션 43001-43651,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5190,105195)
- 기름 유출 대응, 예방 및 관리 수수료 (섹션 46001-46751, 정부 규정 섹션 8670.40, 8670.48)
- 지역 철도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 수수료 (섹션 55001-55381, 정부 규정 섹션 8574.30-8574.48)
- 보험사에 대한 세금 (섹션 12001-13170)
- 목재 수확량세 (섹션 38101-38908)
- 지하저장탱크 유지관리 수수료 (섹션 50101-50162,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299.10-25299.51)
- 연료세 (섹션 8601-9355)
- 수자원 권리 수수료 (섹션 55001-55381, 수자원법 섹션 1525-1552)